

■ 법률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

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종의 한시성(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 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경 (HMO Group : SMG, CENTER 환경)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굽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 등 척추측만증(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 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殃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 / 손목/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발목통증/편증상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 관속에 넣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

■ 장례 예식비

장례 경비를 의논하려면 장례식장에서나 혹은 상담을 하는 어느 장소에서라도 장례 상담인은 장례가격표(General Price List)를 가족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장의사나 상담가나 이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장례 예식비는 기본 사용료(Basic Service of Funeral Director and Overhead), 시신 준비(Body Preparation), 차량(Transportation), 식장과 직원 사용(Use of Facility and Staff), 관, 꽃 등이다.

장례에 관계 되는 물건들은 꼭 장의사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늦게 도착하거나 불량품이 도착하여도 장의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진=shutterstock

Henry 장례 준비서 2.

장례 진행 과정, 시신 처리 방법, 장례 예식비

■ 미국 장례 진행 과정

전통적으로 미국 장례는 환송 예식과 하관하기 전날 Visitation 혹은 Wake라는 조문, 문상하는 날이 있다. 한국에서는 영정사진을 두고 유가족이 문상객을 맞지만 미국에서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관을 열고 망자를 보게 한다.



1. 시신을 장의사로 보낸 후 유가족이 장의사에 가서 장례인도자와 장례 방법과 일정을 정하고 관과 같은 물품을 정한다.

2. 상담인 혹은 장례인도사는 장례 예식을 하는 동안 관을 열고 망자를 보는 미국식 뷔잉을 할 것인지 질문한다. 만약 뷔잉을 한다면 시신 방부 처리가 필요하다고 소개한다. 혹시 아니면 시신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한다.

3. 장례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장례상담인은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정부에 사망일로부터 8일 내에 제출한다(CA).

5. 망자의 주치의는 사망 확인 15시간 내에 사인을 담당 장의사로 보내야 한다(CA).

6. 사망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매장/화장 허락서와 동시에 주정부로부터 발급된다.

7. 사망증명서를 가족이 카운터 오피스에 가서 찾을 수 있고 장의사로 오면 가족이 찾아 간다.

■ 시신 처리 방법

1.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 속에 묻는 것

2. 화장: 시신을 고온의 열기를 사용하여 소각시키고 유골을 거두는 방법

3. 수장: 시신을 구멍이 많이 난 무거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632

